

경제 규제혁신 TF
23-7-2
(공개)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2023. 6. 7.

관계부처합동

순서

I. 추진 배경	1
II. 화학물질 규제혁신 이행 성과	1
III.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3
IV. 향후 계획	4

I. 추진 배경

- 그간 **확일적 화학물질 관리**로 건강·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 미흡
 - 불산 사고·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급격히 강화
→ 사고 예방·대응 중심의 **확일적 관리***로 오히려 현장 적용성 약화
 - * 유독물질 지정시 취급시설 기준, 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반도체·전자 등 국가 첨단산업부터 염색·도금 등 중소기업 업종까지 **화학물질 취급** → 화학물질 규제가 국민 안전 및 민생 경제와 밀접
- 이에, 새 정부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 * (국정과제 68) 국민안전은 더하고 기업불편은 줄이는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22.8),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22.12) 등 국가경제 영향이 큰 분야부터 추진성과 창출
 - 다만,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 → 규제혁신의 체감도 부족

☞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안전 담보와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밀한 화학규제 혁신 추진

II. 화학물질 규제혁신 이행 성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 전환

-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한 취급시설 특화고시* 마련('22.12) → 설치검사 기간 **20~40% 단축**, 연 21조 이상 경제적 효과(업계 추산)
 - * 국제적으로 인증된 설비 인정, 설비별 안전장치를 갖춘 첨단장비 인정 등
- **(연구실 설치검사 명확화)** 화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동 전 설치검사 대상을 연구실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화***('23.1, 관련 안내서 발간)
 - * 연구실 신설이전, 저장보관시설 신설, 시험생산용 설비 신설, 연구실 외부로 연결 배관 신설

□ 고비용 · 장시간 소요되는 자료제출 부담 완화

- (등록 제출서류 완화) 연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22.7, 화평법 시행규칙)
 - * 시험항목 9개 중에서 2개 생략 → 물질당 2천만원 절감, 3개월 단축
- (R&D물질 면제절차 간소화) 0.1톤 미만 R&D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서류 제출시 상세정보(화학물질명·고유번호) 생략 허용(22.7, 화평법 시행규칙)
⇒ 신속한 시료 확보로 기업의 연구일정 지연 방지 및 연구개발 활성화

< 현장의 목소리 개선효과 >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는 A사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나, 9개의 시험자료를 생산하는데 물질당 약 34백만원이 소요되는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공정속도조절제 용도로 쓰이는 경우 시험자료 2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사는 물질등록에 드는 비용의 2/3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정부 · 산업계 · 시민사회 합의에 기반한 화학규제 혁신방향 도출

- (등록기준 조정)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 개선(EU CLP* 도입) 등 안전정보 사각 해소를 전제로 신규물질 등록기준 합리화(0.1t→1t 이상)에 이해관계자 합의(22.12)
 - * 기업이 자율적으로 UN 국제분류체계(GHS)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인·신고 하는 제도(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관리체계 차등화)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관리기준을 유해성·취급량 등에 맞춰 차등화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22.12)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합의안>

- ◎ (지정 체계) 획일적 '유독물질' 지정 → 급성/만성/생태 유해성 물질 구별하여 지정
- ◎ (관리 체계) 유해성, 최대보유량 등에 따라 영업허가, 취급시설기준 등 차등화
 - ▲ (영업허가·신고) 유해성이 낮거나 소량 취급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신고 면제
 - ▲ (취급시설 기준) 유해성별로 취급시설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급성 유해성은 현행수준 취급 시설기준 적용, 생태 유해성은 방류벽·바닥방수 등 배출방지시설 중심 관리)
 - ▲ (검사주기) 유해성·취급량·위험도에 따라 검사주기 차등화(1.2년→1~4년, 소량은 자율관리)

Ⅲ.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

- (기술인력 유효기간 연장)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12월→'28.12월, '23.하, 화관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 기준 충족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자격평가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용을 다루는 표면처리·정밀공업화학자격 등을 추가 인정('23.하, 화관법 시행령)

< 현장의 목소리 현장으로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B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술인력 기준이 엄격하여 영세한 B사업장은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

현재까지는 운영중인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행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기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빈틈없이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교육·수입허가 절차 개선

- (안전교육 효과 제고)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개선('23.하, 화관법 시행규칙)

* (기존 단일) 취급전 16시간 → (개선안 택1)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각 8시간(3개월 이내)

- (수입허가 제도 일원화) ^{산인법}환경부에서 금지물질 수입허가시, 고용부의 수입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 ^{화관법}환경부는 수입허가 사항을 고용부에 통보**('23.하)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기준 합리화

- **(환기설비 기준 정비)**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기준 예외 적용방안 마련('23.하, 화관법 고시 개정)
 - * (현행) 고체상태 물질(납괴 형태로 보관, 밀폐 포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
- **(총칭명* 개선)** 혼합물 제품의 양도·양수시 영업비밀 성분에 대해 EU 방식 총칭명** 허용으로 영업비밀 보호 강화('24.상, 화평법 고시 개정)
 - *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 이름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이름
 - ** (예시) 혼합물에 영업비밀인 고분자화합물이 포함된 경우, 구성요소별 탄소개수 범위 등 표시 → 대표 구성요소를 일반화한 그룹명으로 표시

IV. 향후 계획

□ 사회적 합의(화학안전정책포럼)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22.12월)을 기반으로 구체화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마련*(~'23.8월)
 - * ①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②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제도화, ③유해성 정보 확보·활용방안 마련 등 주제별 공개토론·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 중
-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 근거 마련 등 화평법·화관법 개정 추진('23.하)

□ 현장 이행여건 지속 점검·정비로 규제-현장 간 격차 해소

- 소속·산하기관·지자체 등 규제 건의 채널 확대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신규과제 발굴 및 검토(~'23.상)
- 기술인력 기준, 안전교육 등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23.하)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인체노출·환경배출 최소화를 위한 '만성독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등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23.하)